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83

발의연월일: 2020. 8. 7.

발 의 자:이종성・이 영・박성중

김석기 · 김용판 · 임이자

박대출・강기윤・이종배

김승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학대 이후 사후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보호자 등의 성실참여 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어 노인학대 재발 여부 확인 등에 대 하여 보호자 등이 이를 거부·방해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 후관리를 강화하여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의20제5항 및 제57조제5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0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 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노인보호전문 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① ~ ④ (생 략)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
	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
	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u>된다.</u>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7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
	의20제5항을 위반하여 노인보
	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
	부하거나 방해한 자
6. (생략)	6. (현행과 같음)